

「평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·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위

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15. 6. 15(월) 평창군수(환경위생과장)

나. 회부일자 : 2015. 6. 17(수)

다. 상정일자 : 2015. 6. 22(월) 제211회 평창군의회(정례회)
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상정·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자 : 환경위생과장 한왕섭)

가. 평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·운반 재활용에 관한 조례의 상위 법령인 「폐기물관리법」의 미 근거 조례를 정비, 군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령을 완화하여 주민편익을 도모하고,

나.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을 수정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행정지도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

(전문위원 : 홍금숙)

- 본 조례안은 「폐기물관리법」에서 규정한 미반영 조문의 적용으로 상위 법령에 규정을 맞추고, 법제처 발굴 정비과제 통보에 따른 조례의 개정으로 주민불편 해소와 효율적인 행정지도 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조례안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심사결과 :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【붙임】 평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·운반 및 재활용에
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

평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·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

평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·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호 본문 중 ““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”(이하 “다량배출사업장”이라 한다)이란 「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」(이하 “시행규칙”이라 한다) 제16조”를 ““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”(이하 “다량배출사업장”이라 한다)이란 「폐기물관리법 시행령」 제8조의4”로 한다.

제9조제1항 중 “제14조제4항”을 “제14조제5항”으로 한다.

제18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하고,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.

제19조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